

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고

지식재산(IP: Intellectual Property) 기반 국민안전 관련 현장 중심형 우수기술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8. 3. 26.

특 허 청 장

□ 공모주제

- 재난·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
 - * 1인당 5건 이내 제안, 최종 시상은 최상위로 평가된 1건에 대해서만 수여

□ 추진기관

- 주최 : 특허청, 경찰청, 소방청, 해양경찰청
- 주관 : 한국발명진흥회, 경찰청, 중앙소방학교, 해양경찰교육원

□ 참가대상

- 경찰청, 소방청,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
 -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한정

□ 신청서 제출

- 제출기간
 - 2018년 3월 26일(월) 12:00 ~ 6월 10일(일) 23:59
- 제출방법 : 온라인·모바일 접수(<http://safetyinvention.kr/>)
 -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시스템 상에서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 및 제출
 - *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전에 접수 요망
 - * 제안서의 원활한 이해를 돋기 위해 아이디어 도면 첨부 권장

□ 대회 절차

아이디어 공모	아이디어 심사	아이디어 가치제고	최종심사	시상 및 전시
경찰청, 소방청, 해양경찰청 공무원대상 3~6월	기초·서면심사 선행기술조사 대면심사 6~7월	지식재산 교육 고도화·권리화 모형품 제작지원 7~10월	최종상격심사 10월	우수작 시상 수상작 전시 11~12월

* 대회에서 창출된 특허권은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름

□ 대회 일정(안)

일정	기간
아이디어 공모	3월 26일 ~ 6월 10일
기초심사	6월 11일 ~ 6월 15일
서면심사	6월 18일 ~ 6월 22일
서면심사 결과발표	6월 25일
대면심사	7월 9일 ~ 7월 13일
대면심사 결과발표	7월 16일
집합교육	7월 24일 ~ 7월 26일
최종심사	10월 10일 ~ 10월 12일
시상식	11월 6일
우수작 전시	11월 29일 ~ 12월 2일
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공지함

□ 심사 절차

- 기초·서면·대면·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결정
 - 아이디어 제안서를 서면 심사하여 대면심사 대상 99건 선정
 - 제안자의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대상 33건 선정
 - 아이디어 고도화 결과를 반영하여 33건의 최종 순위 확정*

*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지원 후 결과를 최종 심사

[심사 기준]

심사단계	기초심사	서면심사	선행기술조사	대면심사	최종심사
선정기준	서류완결성 분야적합성 신청자격	→ 독창성 발전가능성 현장적합성	→ 신규성 진보성	→ 사업화가능성 연구개발가능성 현장활용가능성	→ 사업화가능성 완성도 현장활용가능성
선정건수	미정	99건(3배수)	99건(3배수)	33건(수상자)	33건(상격)

□ 시상계획(안)

구분	상 격	시상 주체	공무원부문	상금
개인상	대상	국가지식재산위원장	1	5,000,000원 * 1명
	금상	행정안전부장관	2	3,000,000원 * 2명
	은상	경찰청장	2	1,000,000원 * 12명
		소방청장	2	
		해양경찰청장	2	
		특허청장	6	
	동상	경찰청장	3	500,000원 * 18명
		중앙소방학교장	3	
		해양경찰교육원장	3	
		한국발명진흥회장	9	
	단체상	특허청장	1	2,000,000원
합 계			34	34,000,000

※ 시상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수상자 특전 및 유의사항

- 아이디어 고도화 집합교육 제공 (대면심사 합격자 대상)
 - 일시 및 장소 : 7월 24일(화) ~ 26일(목), 천안해양경찰연구센터 연수원
 - 내용 : 직무발명, 특허명세서 작성, 창의적 문제 해결 등 지식재산권 교육
 - * 찾아가는 방문컨설팅 1회 제공 : 수행사와 일정 협의 후 진행
- 기술이전 지원 (대면심사 합격자 대상)
 - 수요기업이 매칭될 경우 기술이전을 진행하여 적정한 실시료를 지급
 - * 자세한 내용은 국유특허 기술이전 계약 절차에 따라 결정
- 해외사례연수 지원 예정
 - 대상·금상 수상자 3인에 대하여 해외사례연수 기회 제공
 - * 자세한 내용은 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

□ 문의처

- 대회 문의
 - 한국발명진흥회 02-3459-2821, kimmw5@kipa.org
 -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실 02-3150-0665, dbdydw05803@police.go.kr
 - 중앙소방학교 041-559-0566, heaven47@kipa.org
 - 해양경찰교육원(연구센터) 041-640-2451, kkw3835@korea.kr

○ 지식재산관련 상담

-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-1900(전국 대표전화), <http://www.ripc.org/>

□ 기타 사항

- 경찰청, 소방청,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 가능 (기업 등 민간 참여 불가)
 - * 팀으로 참가하는 경우 팀원 중 1명만 대표로 접수 및 심사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자 1인에 한해서 집합교육, 포상(상장 및 상금), 해외 사례연수를 지원 받을 수 있음.
- 1인당 5건 이내의 아이디어 공모가 가능하며, 최종 시상은 최상위 성적에 해당되는 기술 1건에 대해서만 수여됨
- 제안된 아이디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인 발명 또는 고안에 해당되어야 함
- 본인의 발명(또는 고안)이 아니거나 공지 또는 실시된 발명(또는 고안)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 불가 및 취소
- 국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·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
- 대회 출품 전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은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이라 하더라도 수상 불가
-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아이디어는 제안할 수 없음
- 대회에서 창출된 특허권은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름
-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발명을 신고하여야 함
-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승계 결정된 제안자는 즉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함
- 국민안전과 관련되었으나, 승계 거부된 경우 국가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
-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붙임 : “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”에 따름
- 이 요강은 주최·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본 대회에 응모된 모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다음 가이드라인에 따른다.

- 가.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다.
- 나. 주최측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, 비밀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 다만,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.
- 다.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를 응모한 날부터 서면평가 발표일 전까지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주최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주최측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폐기한다.
- 라. 대회 수상자는 『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 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.
- 마. 주최측은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최종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한다. 다만, 수상작의 경우 제안자 동의를 얻어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바. 주최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최측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.
 -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
 -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
 -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
- 사.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아.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, 주최측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, 중재기관,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.
- 자. 주최측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한다.